

[제26호의2 서식]
(지방자치단체용)

세 입 징 수 액 계 산 서

금액 단위 : 원

과 목	징 수 결 정 액		수 납 액		환 부 액		불 납 결 손 액		미수납액	비 고
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	

- 기재요령 : (1) "과목"란에는 (관)(항)(목)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.
 (2) 미수납액 중 납기가 지난 것은 그 금액을 "비고"란에 덧붙여 써 넣을 것.
 (3) "환부액"란에는 지방세환부액을 써 넣을 것.

[제26호의2 서식 부표1]

세입과오납금총당 및 환부액명세서

금액 단위 : 원

과 목	과오납결정액		충당결정액		환 부 액						비고
					환부결정액		지 급 액		미 지 급 액		
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본기분	본기까지의 누 계	

기재요령 : 과오납 발생과목과 충당과목이 다를 때에는 그 내역을 비고란에 써 넣을 것

[제26호의2 서식 부표3]

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

금액 단위 : 원

적요	금액	비고
· 수입금출납원 영수액 ·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영수 납입액		
합계		

[제26호의2 서식 부표4]

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조조서

금액 단위 : 원

적요		금 액	비 고
수 입 총 액(A)			
(예시) (금고영수액이 수납액보다 많은 경우) 1. 20 년도 세입을 본 연도 세입으로 금고에 오납입액 2. ○○○특별회계 세입을 본 회계 세입으로 금고에 오납입액 (금고영수액이 수납액보다 적은 경우) 1. 본 연도 세입을 20 년도 세입으로 오납입액 2. 본 회계 세입을 ○○특별회계 세입으로 오납입액 3. 출납정리기한까지 금고에 미납입액	계		
	계		
	계		
금 고 영 수 필 통 지 금 액 (B)			
명	○ ○ 은행본점		
세	○ ○ 은행 ○○○지점		
	X X 은행 XXX지점		
차 액 (A-B)			

[제26호의2 서식 부표5]

미 수 납 액 명 세 서

금액 단위 : 원

과목	금액	비고	과목	금액	비고

기재요령 : (1) 전년도로부터의 이월미수납액으로서 본년도 중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각각 이를 별행으로 매 연도 별로 구분기재할 것.

(2) "비고"란에는 미수납 사유와 미수납자 ○○○외 ○○명으로 기입할 것.